

# 가마를 탈 것인가 말을 탈 것인가? 조서와 칙서를 함께 맞이할 것인가 별도로 맞이할 것인가? \*

- 성종 19년 조선과 명 사신의 迎詔勅禮를 둘러싼 갈등과 그 성격 -

최종석\*\*

1. 머리말
2. 乘輦을 둘러싼 논란과 그 귀결
3. 詔勅合迎을 둘러싼 논란과 그 귀결
4. 맺음말

## 1. 머리말

성종 19년 3월 13일에 경복궁에서 頒詔와 受勅이 이루어졌다.<sup>1)</sup> 이전과 특별히 다른 게 없는 頒詔와 受勅이었지만, 이 일에 앞서 사전 확인 과정에서 이전과 달리 조선과 명 사신은 詔勅을 맞이하는 절차, 구체적으로는 이 가운데 두 사안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갈등하였다. 迎詔 시 국왕의 교통수단, 구체적으로는 모화관에서 궁궐까지 무엇을 타고 이동할 것인가를 두고 조선과 명 사신은 각각 가마(輦)와 말(馬)을 주장하면서 갈등하였고, 함께 온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는 방식을 두고 조선은 조서를 맞이할 시에 칙서도 함께 맞이해야 한다고(詔勅合

\* 이 논문은 2018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1)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정축 11번째 기사.

迎) 본 반면, 명 사신은 조서와 칙서를 별도로 맞이해야 한다고(詔勅分迎) 역설하였다.

이들 사안을 두고 벌인 갈등은 이례적이었다. 그동안 영조 시에 국왕은 연을 타고 궁궐로 이동하였다. 1428년(세종 10) 3월 19일 예조가 작성하여 올린 '迎詔儀'<sup>2)</sup>를 시작으로 한 각종 영조례 의주에도 국왕이 연을 타고 궁궐로 이동한다고 적시되어 있다.<sup>3)</sup> 그리고 조서와 칙서가 함께 온 경우에 국왕은 양자를 한꺼번에 맞이하였다. 조서와 칙서는 궁궐로 일시에 이동하였고 국왕은 궁궐에서 조서와 칙서를 차례대로 받았다. 성종 19년에 명 사신이 문제로 삼기 전까지 명 사신이 건, 조선 측이 건 간에 그동안 해온, 영조 시 국왕의 乘輦 및 詔勅合迎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은 전혀 없었다.

성종 19년 조선과 명 사신 간에 詔勅을 맞이하는 절차를 두고 벌인 갈등은 그동안 해 온 방식을 이때 조선에 온 명 사신이 '유달리' 문제 삼은 데서 시작된 것이었다. 조선 측은 명 사신의 의견을 인정·수용하지 않고 구래의 방식을 고수하였고 명 사신도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은 발생하였다. 양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쟁은 지속되었고, 그러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절충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논란은 종결되었다. 전자에서는 조선의 견해가 관철되어 종래대로 영조 시에 국왕은 연을 탔고, 후자에서는 명 사신의 견해가 관철되어 조선 국왕은 慕華館에 가서 조서를 맞이하고 연을 타고서 조서와 사신을 경복궁으로 인도한 후 조서를 받고서, 다시금 모화관에서 가서 칙서를 맞이하고 말을 타고 칙서와 사신을 경복궁으로 인도한 후 칙서를 받았다(詔勅分迎).

일대일 무승부인 듯 보이지만 조선 입장에서 보자면, 고례인 조서와 칙서를 일시에 맞이하는 방식이 명 사신의 주장에 밀려 개정되고 만 셈이어서, 논쟁 결과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국왕이 칙서를 맞이할 시에 말을 탄 것도 불

2)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3월 신축 “詔書至 殿下率群臣躬身迎使臣 捧詔書 置龍亭中 出上路 司香二人挾持香亭 續上香 金鼓在前 次耆老僧人乘馬行 次群臣乘馬行 次王世子乘馬行 次殿下乘輦行 次儀仗鼓樂 次香亭 次詔書龍亭 次使臣行於龍亭之後”

3) 『세종실록』 오례의 迎詔書儀(『세종실록』 권132, 五禮 嘉禮儀式 迎詔書儀)와 『國朝五禮儀』의 迎詔書儀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만스러운 일이었다.<sup>4)</sup> 그로 인해 이 사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조선과 명 사신 간에 斷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인종·명종대까지 그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이 희망한 결과대로 사안은 종결되었다. 즉 국왕은 연을 타고 조서와 칙서를 한꺼번에 맞이하고 칙서만이 온 경우에도 조서와 마찬가지로 연을 타고 맞이하는 방식으로 사안이 귀결되었다. 詔勅合迎으로의 복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연을 타고 칙서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필자는 이 사안 및 이에 관한 일련의 갈등과정과 그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분량 문제도 있고 밀도 높은 접근을 위해서인 것도 있고 해서 검토 작업을 2부에 걸쳐 진행하려 한다. 전편은 성종 19년 조선과 명 사신 간에 詔勅을 맞이하는 절차를 두고 벌인 갈등과 그 귀결에 관한 것이고, 후편은 이러한 성종 19년 사건의 여진에 관한 것이 되는데, 이 글은 전편에 해당한다.

본고의 주요 검토 사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은 이러한 갈등의 발생 원인에 관한 탐색이다. 이전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sup>6)</sup> 조선은 명이 작성하여 사여한 『蕃國儀注』의 蕃國接詔儀注와 蕃國受印物儀注를 토대로 각각 영조례와 영칙례를 운영하였기에,<sup>7)</sup> 조선과 명 사신이 詔勅을 맞이하는 절차를 두고 갈등하는 현상은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고안·작성한 의주를 토대로 영조례와 영칙례를 운용한 고려전기에는<sup>8)</sup> 오히려 고려와 詔·勅使 간에 그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역설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조선과 명 사신 간의 詔勅을 맞이하는 절차를 두고 벌인 갈등은 당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4) 이 일이 불만스러웠을 이유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5) 조선과 명 사신의 詔勅을 맞이하는 절차를 두고 벌인 갈등에 관한 이상의 서술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필자가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후술하듯 이 사안에 대한 필자의 접근방식과 구성 내용은 기존 연구와 상이하다.

6) 최종석, 2018b 『鞠躬인가 五拜三叩頭인가?: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둘러싼 조선과 명 사신 간의 갈등에 관한 탐색』 『한국문화』 83.

7) 최종석, 2015 『고려 말기·조선 초기 迎詔儀禮에 관한 새로운 이해 모색: 『蕃國儀注』의 소개와 복원』 『민족문화연구』 69; 최종석, 2018a 『조선초기 迎詔禮 운영과 『蕃國儀注』』 『역사와 담론』 86 참조.

8) 『고려사』 권65, 지19 예7 빈례 迎北朝詔使儀와 迎北朝起復告勅使儀.

있는 일이었다. 당대 맥락의 포착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 발생의 원인을 규명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는 성종 19년의 이 일이 있기 전에 수많은 詔使가 왔고 조서와 칙서가 함께 온 경우도 드물지 않았는데, 왜 이때서야 영조 시 국왕의 乘輦 및 詔勅合迎이 문제로 대두한 것인지에 관해서다. 또한, 이와도 연관된 것으로 詔勅을 맞이하는 절차 가운데 왜 이들 사안이 유독 당시 명 사신에 의해서 문제로 인식 되었을까 하는 사실에 관해서다.

마지막으로, 조선은 무엇을 근거로 영조 시 국왕의 乘輦 및 詔勅合迎을 견지하였고 명 사신은 무엇을 근거로 영조 시 국왕의 乘馬 및 詔勅分迎을 주장하였을까 하는 점에 관해서다. 이러한 검토는 당시 조선과 명 사신 간 논쟁의 성격을 탐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또한, 이와도 연관된 것으로 영조 시 국왕의 乘輦은 조선의 뜻대로 된 데 비해 詔勅分迎은 명 사신의 의사대로 된 이유에 관해서다.

성종 19년 조선과 명 사신 간에 詔勅을 맞이하는 절차를 두고 벌인 갈등은 이를 다룬 선행 연구가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sup>9)</sup> 이들 연구를 통해서 당시 조선과 명 사신 간에 논란이 된 지점 및 양측 간 논쟁의 추이와 귀결 등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지고 밝혀졌다. 그렇긴 하나 아쉽게도 필자가 앞서 제기한 의문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리고 필자는 핵심 논지의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김한규는 당시 논쟁을 선구적으로 검토하면서 “동월은 조서를 영접하는 전통적 관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조선 국왕이 輦을 타지 않고 말을 타고 조서를 맞도록 집요하게 요구해서 이를 관철시켰다. 동월은 조선 국왕이 말을 타고 조서를 맞도록 하기 위해 그때까지 조서와 칙서를 함께 영접하던 관행을 깨고 각각 따로 맞게 하였는데, 이는 이후 하나의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라고 정리하였는데,<sup>10)</sup> 본문에서 자세히 논증하겠지만 명 사신의 요구가 관철된 지점은 말을 타고 조서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와 칙서를 별도로 맞이하는 것이었고 이 경우에 국왕은 칙서를 맞이할 때 말을 타

9) 김한규, 2011 『董越의 『朝鮮賦』와 迎詔禮 論爭』 『사조선록(使朝鮮錄) 연구』, 서강대학교 출판부; 이규철, 2015 『조선 성종대 외교의례 변경에 대한 논의와 대명의식』 『역사와 현실』 98.

10) 김한규, 위의 책, 241면.

야 했다. 또한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했다는 견해도 동의할 수 없는 게,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에 국왕은 연을 타고 조서와 칙서를 한꺼번에 맞이하고 칙서만이 온 경우에도 조서와 마찬가지로 연을 타고 맞이하게 되었다.<sup>11)</sup>

관점 면에서도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일전에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절차를 두고 조선과 명 사신이 갈등한 사안을 다룬 바 있다.<sup>12)</sup> 조선은 鞠躬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려 한 반면 명 사신은 五拜三叩頭의 禮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고 해서, 양 측 사이에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다. 종래에는 명 사신의 五拜三叩頭 禮 요구를 부당하고 강압적 성격의 것이거나 보다 저자세를 강요하는 행위로, 조선 측의 鞠躬 禮 고수를 이에 대한 거부(저항)로 간주하였으나, 필자는 이러한 파워 게임 식의 이해 방식이 당시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곤 한 당대의 맥락을 규명한 바 있다.

이 글은 일전의 연구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조선과 명(사신) 간 외교의례를 둘러싼 갈등을 파워 게임 식으로 보는 종래의 시각을<sup>13)</sup> 탈피하여, 양 측 모두 문명 중화의 구현 차원에서 ‘올바른’ 禮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감대 속에서 사전에 ‘올바른’ 실천 방식이 뚜렷하게 존재하지는 않는 일부 의절을 놓고 각자의 실천 방식이 예에 부합한다고 고수한 데서 빚어진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만이 조선과 명(사신) 간 외교의례를 둘러싼 갈등의 전모와 성격을 파악하는 길은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중요하고도 상당한 지분을 차지함에도 그간 철저히 외면되다시피 한 만큼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연구성과의 축적이 활발하고도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본 연구가 미약하게나마 이러한 연구 흐름의 활성화에 촉매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1) 후편에서 이 점을 상세히 논증할 것이다. 한편 이규철은 선행 연구에 별다른 이견을 피력하지 않은 반면 당시의 논쟁 결과가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했다는 견해와 同調하여 성종대의 결정이 이후 외교의례를 시행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규철, 2015 앞의 논문, 184면.

12) 최종석, 2018b 앞의 논문.

13) 기존에는 당시 명 사신이 조선과 상이한 의견을 고수한 것을 朝明 책봉-조공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 시도로 본다든가(김한규), 일부나마 명 사신의 주장을 수용한 것을 조선에서 명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위상이 보다 확대된 현상으로 해석한다든가(이규철) 하였다.

## 2. 乘輦을 둘러싼 논란과 그 귀결

성종 19년 3월 명 사신의 詔勅을 맞이하는 禮에 관한, 정확히는 그 가운데 일부 예식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와 그 결과는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한동안 조선 조정 내에서 논란거리로 작용하였다. 이 사안은 조선이 迎詔勅禮와 같은 외교의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의례를 어떠한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지 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성종실록』 214, 성종 19년 3월 13일(정축) 기사를 실마리 삼아 이 사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申時에 중국 사신이 조서와 칙서를 받들고 慕華館에 이르니, 임금은 冕服을 갖추고 나아가 맞이하였다. 중국 사신은 조서와 칙서를 받들어 각각 龍亭에 안치하였는데, 그 勅書는 帳殿에 머물러 두었다. 임금이 詔書를 인도하여 輦을 타고 앞서가고 중국 사신은 말을 타고 조서를 따라서 갔다. 경복궁에 이르러 조서를 반포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그 조서는 말하기를……하였다.

중국 사신은 도로 나와 慕華館에 이르렀다. 임금은 翼善冠에 袞袍를 갖추고 敦義門으로 해서 나아가 칙서를 맞이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임금은) 칙서를 인도하여 말을 타고 먼저 갔다. 경복궁에 이르러 칙서를 받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그 칙서는 말하기를……하였다.<sup>14)</sup>

위 기록에 따르면, 조선 국왕은 慕華館에 가서 조서를 맞이하고 연을 타고서 조서와 사신을 경복궁으로 인도한 후 조서를 받고서, 다시금 모화관에서 가서 칙서를 맞이하고 말을 타고서 칙서와 사신을 경복궁으로 인도한 후 칙서를 받았다. 함께 온 조서와 칙서를 이러한 방식으로 별도로 맞이하고 받는 경우(詔勅分迎)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는 후술하듯 당시 명 사신의 문제 제기로 시작하여 조선 조정과 명 사신과의 논쟁 및 그 해결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의 소산이었다.

이 예식 거행의 며칠 앞인 3월 10일(갑술) 조선 조정에 전달된 遠接使 許琮의 馳啓에서 명 사신의 영조칙례에 관한 문제 제기는 처음으로 확인된다. 馳啓에 따르면,<sup>15)</sup> 명 사신은 평산도호부의 寶山站에 도착해서는 원접사인 허종을 상대

14)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정축 11번째 기사.

15)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갑술 4번째 기사.

로 ‘어제 문례관이 건넌 의주<sup>16)</sup>를 보니 迎詔 시에 국왕이 輦을 타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옳지만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은 예문에 없어 불가하다’라고 언급하였다. 명 사신이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을 문제 삼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참고로 명 사신의 詔勅分迎 언급은 迎詔 시 국왕의 乘輦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나온다. 원접사 허중은 이에 반발하여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은 이미 古例가 되었고 이전에 왔던 사신들이 영조 시 국왕의 乘輦을 명 조정에 말했을 것이고 조정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여, 사신의 문제 제기가 다소 뜬금없다는 식으로, 달리 말해 그동안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을 사신도 명 조정도 용인하였음을 상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正使·副使도 물러나지 않고 ‘전에 그러했다고 해도 禮에 부합하지 않기에 고쳐야 하고, 황제도 때에 따라서는 말을 타며,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은 국왕의 교서를 맞이하는 신하가 肩輦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지 못한 행위이고, 황제의 聖旨가 없는데 함부로 연을 타고자 한다면 王京에 들어갈 수 없고 황제에 馳奏하여 명령을 받은 이후에야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여,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을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강경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허중은 그동안 온 많은 사신이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을 단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고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기에 기왕의 방식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앞서와 다른 게 없는 논리로 응수하였다. 허중을 설득하기 위해 명 사신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이 禮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였으니, 막연히 국왕의 乘輦이 예문에 없어 불가하다고 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諸國迎詔儀註’, 후술하듯 『大明集禮』 蕃國接詔儀注에는<sup>17)</sup> 연을 타고 조서를 맞이하는 예가 없다고 하였다. 명 사신은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을 禮에 부합하지 않는 非禮로 규정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었다. 乘輦 대신에 요구한 것은 영조 시 국왕의 乘馬였다.<sup>18)</sup>

16) 問禮官 權景祐가 와서 아뢴 내용에 따르면, 권경우는 평산도호부의 安城站에서 명 사신에게 儀註를 전했다.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갑술 3번째 기사 참조.

17) 당시 사신이 가지고 온 ‘諸國迎詔儀註’는 다른 곳에서는 『大明洪武集禮』 接詔書儀라고 한다. 정확히는 『대명집례』 蕃國接詔儀注였을 것이다(『大明集禮』 卷32, 賓禮3). 당시 명 사신은 『대명집례』 가운데 謄寫文으로 된 蕃國接詔儀注와 蕃國受印物儀注를 가지고 왔다.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갑술 5번째 기사 참조.

성종대에 이르러서야 명 사신이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을 뜬금없이 문제 삼은 셈인데, 이러한 식의 현상은 이례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세종 32년에도 명 사신 倪謙이 고려말 이래로 도성문 밖에서 국왕이 선 채로 혹은 鞠躬의 예로 조서를 맞이해온 관례를 새삼 문제 삼으면서 이를 대신하여 五拜三叩頭의 예로 조서를 맞이할 것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sup>19)</sup> 이러한 종류의 일은 일정 정도 구조적 성격의 것이자 역사성을 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발생한 까닭을 다소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sup>20)</sup>

명은 이전 왕조들과 달리 천자가 예제를 매개로 하여 중국과 蕃國들로 이루어진 천하를 다스리는 새로운 방식의 화이질서를 구현하고자 하였고, 그 일환으로 번국 내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의 의주까지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sup>21)</sup> 1370년 9월에 편찬된 『大明集禮』의 賓禮 내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가 이러한 성격의 의주들이다. 이 가운데 蕃國接詔儀注는 영조례 의주이고 蕃國受印物儀注는 영칙례와 관련 있는 의주이다. 명이 홍무 2년(1369, 공민왕 18) 9월에 각종 蕃國禮를 보완하여 『대명집례』의 빈례를 완성해 가는 와중에, 고려는 명 측에 번국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해야 하는 의례들의 의주를 반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명은 고려의 요청을 응해 『대명집례』 빈례에서 해당 의례들의 의주를 뽑아 『蕃國儀注』를 편찬하여 고려에 보냈다. 이러하다 보니 『蕃國儀注』에 수록된 4종의 의주는 『대명집례』 빈례의 해당 의주와 사실상 동일하였다. 고려는(이후 조선은) 『蕃國儀注』의 이들 의주를 토대로 황제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의례를 작성·운용하였다. 명 황제의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포함해서 말이다.<sup>22)</sup>

18) 후술하듯 명 사신이 乘輦 대신에 乘馬를 주장하였음은 논의가 전개되면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19) 『세종실록』 권127, 세종 32년 1월 을사.

20) 이 설명은 최종석, 2018b 앞의 논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21) 이에 관해서는 岩井茂樹, 2005 『明代中國の禮制覇權主義と東アジアの秩序』 『東洋文化』 85: 檀上寛, 2013 『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 京都大學學術出版會 가운데 '第三部 明代朝貢體制と華夷秩序' 참조.

22) 최종석, 2015 앞의 논문; 최종석, 2018a 앞의 논문 참조.



조선은 명이 사여한 『번국의주』의 ‘蕃國接詔儀注’를 토대로 영조례를 운영하였기에, 영조례 운영을 둘러싸고 조선과 명 사이에 갈등할 일은 없을 듯하지만, 실제로는 영조례의 일부 예식절차를 놓고 조선과 명 사신 간에 갈등이 발생하곤 하였다.<sup>23)</sup> 이러한 갈등은 『번국의주』 ‘蕃國接詔儀注’가 영조례 예식절차의 뼈대만을 갖추고 있다고 할 정도로 소략한 데서 기본적으로 기인한다. 이것에만 의존해서는 영조례가 도저히 거행될 수 없었기에, 영조례를 실제로 거행해야 하는 측(조선)은 어떠한 식으로든 영조례 의주의 빈 부분을 메워야 했다. 바로 이 메운 결과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명조는 개략적인 성격의 『대명집례』 ‘蕃國接詔儀注’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애초의 목적인 양, ‘蕃國接詔儀注’를 상세화한 의주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명 사신이 참고할 의주조차 내려주지 않았다. 또한 명조는 ‘蕃國接詔儀注’를 반사 받은 조선(고려)이 그 의주의 빈 부분을 (禮的으로) 타당하게 메워 운영하는지에 관심이 없었다. 영조례 의주의 빈틈을 메우는 몫은 전적으로 영조례를 실행하는 측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다 보니 명 사신이 영조례의 예식절차를 문제로 삼을지 여부 및 문제로 삼는다고 할 때 어느 지점을 지적할지는 조선에 온 사신의 성향, 역량 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다. (儀)禮 방면에 비상한 관심이 있는 일부 사신은 조선에서 영조례가 제대로 구현되는지에 관심을 가졌고, 조선 측에 의해 상세히 작성된 의주 가운데 非禮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곤 하였다. 재차 언급하듯이, 이러한 행위는 국가(명)가 부여한 임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기 보다는 사신 개인의 성향, 역량 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sup>24)</sup> 명초에 한반도에 온 사신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한 환관들은 예제 자체에 관심이 없어 예식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던 데 비해,<sup>25)</sup> 세종대에 온 倪謙, 성종 19년에 正使로 온 董

23) 조선과 명 사신 간에 詔勅을 맞이하는 절차를 두고 벌인 갈등의 발생 원인을 영조례를 위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영칙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4) 이에 관해서는 최종석, 2018b 앞의 논문 참조.

25) 조영록, 1990 『鮮初의 朝鮮出身明使考: 成宗朝의 對明交涉과 明使鄭同』 『국사관논총』 14; 정동훈, 2013 『명초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려의 위상: 홍무 연간 명의 사신 인선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9; 정동훈, 2017 『永樂帝의 말과 글: 영락 연간 조선-명 관계

越 등의 登科 文臣으로 예제에 밝은 사신들이 유달리 일부 예식절차를 非禮라고 하여 시정을 요구하곤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sup>26)</sup> 일부 의절을 문제 삼은 명 사신은 기본적으로 문명 중화의 구현 차원에서 ‘올바른’ 禮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러한 행보를 보였을 것이다.<sup>27)</sup> 이들은 조선이 『번국의주』 ‘蕃國接詔儀注’의 빈 부분을 배우고 상세히 한 내용—정확히는 그 가운데 극히 일부—에 이견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문제로 삼는 지점이 같지만은 않았다. 가령 예겸이 문제로 삼은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행위는 동월에게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고, 동월이 문제로 삼은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은 예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사신 개인의 성향, 역량 등에 좌우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빈틈을 배우는 것을 두고 논란의 여지 없는 ‘보편타당하고 완전한’ 무언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조선과 명 사신 사이에서, 명 사신 사이에서도 일부 예식절차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누구나 ‘올바른’ 禮를 실현하고자 했으면서도 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성종 19년 이전의 명 사신들은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은 데 비해 성종 19년의 명 사신이 유독 문제로 삼은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sup>28)</sup> 이는 당시 명 사신의 개인 차원의 성향에서 기인하였을 것이다. 正使인 董越은 하급 관원인 行人司員이 아니라 堂上員으로 사신에 차정된 인물로,<sup>29)</sup> 文翰職인 翰林侍講이었고 당시 사람들에 의해 문장

의 두 층위, 『한국문화』 78: 이규철, 2015 앞의 논문 참조.

26) 최종석, 2018b 앞의 논문. 조영록(위의 논문)에 따르면, 환관 사신이 위주가 되면서도, 朝官의 使臣으로의 발탁은 주로 새 황제가 즉위조서를 頒行할 때 이루어졌고 즉위 조서와 무관하게 온 朝官 使臣도 일부 있기는 했다고 지적하였다. 조관 사신이 왔을 때마다 예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는 않았지만, 논란이 있는 경우는 조관 사신이 왔을 때였다. 성종대의 경우 朝官 使臣은 성종 7년에 온 祈順, 성종 19년에 온 董越, 성종 23년에 온 艾璞(모두 正使임)이었는데, 이들이 왔을 때 한결같이 영조칙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27) 殷夢霞와 于浩가 편집한 『使朝鮮錄』에는 영조례의 예식절차 가운데 일부를 문제 삼은 倪謙, 董越, 龔用卿의 조선에 出使하여 기록한 기행문이 수록되어 있다. 倪謙의 『遼海編』, 董越의 『朝鮮賦』, 龔用卿의 『使朝鮮錄』이 그것인데, 이들 기행문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을 중화 문명이 구현되는 곳으로 보았고 명(중화)의 성교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 데 힘썼다. 杜慧月, 2014 『求同在異邦: 明代文臣使朝鮮錄論略』 『淵民學志』 21 참조.

28) 그렇다고 해도 조선 입장에서는 뜬금없고 당혹스러운 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에 능하다고 평가받고 있었다.<sup>30)</sup> 그는 원접사 허종을 상대로 ‘전에 듣건대, 조선은 독서하고 禮를 안다(知禮)고 하더니, 이제 재상의 行禮를 보니, 바야흐로 전에 들은 것이 거짓이 아님을 믿겠다’라고<sup>31)</sup> 할 정도로, 조선에서 禮가 구현되는 양상에 관심 많았고<sup>32)</sup> 자신도 行禮에 소홀함이 없었다. 평양에서 箕子廟를 배알하여 四拜禮를 행하고 檀君廟를 배알하여 再拜禮를 행하며 文廟에 가서 四拜禮를 행한다든가,<sup>33)</sup> 問禮官 權景祐가 건넌 영조례 의주에 기재된 ‘殿下’를 『大明集禮』에 따라 ‘國王’으로 고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의주를 꼼꼼히 확인한다든가<sup>34)</sup> 하는 사례는 동월이 禮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면모 가운데 일부에 해당한다.<sup>35)</sup>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당시 명 사신이 『대명집례』 중에서 謄寫文으로 된 蕃國接詔儀注와 蕃國受印物儀注를 가지고 온 사실이다. 이는 전례 없는 일로 이전 사신들이 의주 없이 빈손으로 온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sup>36)</sup> 『대명집례』는 편찬되자마자 禁中되었고 가정 9년(1530)에야 공개된 사실을<sup>37)</sup> 감안하면, 명 사

29) 북경에서 동월은 登極使 右議政 盧思愼, 副使 武靈君 柳子光, 正朝使 延原君 李崇元 등을 상대로 “나는 지금 황제가 東宮으로 있을 때의 侍講입니다. 이전에는 그대 나라에 보내는 사신을 모두 行人司員으로 差任하고 堂上員을 差任해 보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조정은 그대 나라의 事大가 至誠하다 하여 특별히 나와 같은 연로한 사람을 사신으로 선발했으니, 이 뜻을 재상에게 말로 전하시오”(『성종실록』 권212, 성종 19년 윤1월 경신)라고 한 바 있다.

30) 『성종실록』 권212, 성종 19년 윤1월 무자. 賀登極使 盧思愼은 성종에게 ‘이번에 나오는 上使는 詩를 잘하고 副使는 經學에 정밀하다는 소리를 들었음을’ 전한 바 있다(『성종실록』 권212, 성종 19년 윤1월 계사). 또한 檢討官 權柱는 동월과 副使인 王敞을 ‘識理朝士’라고 칭한 바 있다(『성종실록』 권216, 성종 19년 5월 경오).

31) 『성종실록』 권213, 성종 19년 2월 계해.

32)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무진;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신미 2번째 기사.

33)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계유.

34)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갑술 3번째 기사.

35)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무진;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신미 2번째 기사. 副使인 王敞도 등과 문신으로 정사인 동월과 다르지 않은 성향을 지니고(『성종실록』 권213, 성종 19년 2월 계해) 동월의 행보를 뒷받침해주었을 것이다. 당시 명 사신이 禮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면모에 관해서는 이규철, 2015 앞의 논문, 173-175면 참조.

36) 최중석, 2018b 앞의 논문 참조.

37) 『明世宗實錄』 卷114, 嘉靖 9년 6월 庚午. 郭嘉輝, 2018 『天下通禮: 明代賓禮의 流傳與域外實踐의 紛爭』, 『臺灣師大歷史學報』 59, 6면 참조.

신이 『대명집례』의 謄寫文을 가지고 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은 분명하다.<sup>38)</sup> 명 사신은 영조칙례를 예법에 맞게 실행하겠다고 하는 의지이자 자부심에서 『대명집례』의 謄寫文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正使인 동월을 비롯하여 명 사신이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을 문제 삼은 것은 이상의 면모로 보아 조선을 길들이는 식의 특별한 정치적 의도에서라기보다는<sup>39)</sup> 사신의 말마따나 이것이 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서였을 것이다.<sup>40)</sup> 명 사신의 눈에는 영조 시 국왕의 乘輦이 非禮로 비친 것이다.

‘문례관이 가지고 온 의주는 모두 옳다’라고 한 데서 보듯, 당시 명 사신의 지적은 영조례 의주 전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단 하나의 예식절차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이 작성한 영조례 의주는 명(홍무제)이 하사한 『蕃國儀注』 蕃國接詔儀注를 토대로 한 데다가 그 빈 부분을 禮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메웠기에,<sup>41)</sup> 설령 작심하고 非禮라고 문제 삼으려 해도 그럴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문제가 된 지점은 『번국

38) 명 사신이 『대명집례』 謄寫文을 소지하고 온 것은 제도 차원의 조치가 아니고 명 사신의 개인적 노력의 소산이었을 것이다. 만약 제도 차원의 조치였다면 명 사신은 『대명집례』 蕃國接詔儀注가 아니라 그 개정판이라 할 수 있는 1375년(홍무 8)에 작성된 ‘蕃國迎接儀’(『明太祖實錄』 卷97, 洪武 8년 2월 壬寅)내지 홍무 18년의 蕃國迎詔儀(『大明會典』 卷58, 禮部 行人司 儀制清吏司 蕃國禮)를 소지했어야 했을 것이다. 명 사신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대명집례』 등사본을 확보했는지 불투명하지만, 예에 맞는 영조례 실현을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백방으로 노력하여 이를 확보한 듯싶다. 그리고 이러한 비상한 사행 준비와 관련하여 『朝鮮賦』 自注를 근거로 하여 동월이 사행을 오기 전에 조선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학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지적(윤재환, 2012 『董越의 『朝鮮賦』를 통해 본 中國 使臣의 朝鮮 認識』 『東方漢文學』 53, 194면) 또한 주목된다.

39)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갑술 4번째 기사 “兩使曰 吾等來時 齎諸國迎詔儀註而來 諸國無乘輦迎詔之禮 本國讀書知禮 與中國爲一家 凡干禮度 不可不講 故吾等言之 此亦責備賢者之意也 若如他外國 則渠雖失禮 何煩說與 須將此意 速啓殿下”. 이러한 명 사신의 언설은 전후 문맥으로 볼 때 립 서비스는 아닐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동월은 조선에 우호적인 의식을 가진 문인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신태영, 2004 『明使 董越의 『朝鮮賦』에 나타난 朝鮮認識』 『漢文學報』 10; 윤재환, 위의 논문 참조.

40) 동월은 『朝鮮賦』에서 중국의 문화, 예제 등을 기준으로 이에 합치하는 조선의 풍속, 예제를 긍정적으로 본 반면, 반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언급하였다(윤재환, 위의 논문 참조). 이러한 태도는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을 문제 삼은 행위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41) 최중석, 2018a 앞의 논문.

의주』와 『대명집례』의 蕃國接詔儀注에 기재된 ‘次王具冕服行’에 관한 해석의 차이였다. 애초에 『번국의주』 蕃國接詔儀注와 그 원본이라 할 수 있는 『대명집례』 蕃國接詔儀注에는 국왕이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교외에서 궁궐로 이동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조선은 ‘연을 타고 가는(乘輦)’ 것으로 본 반면 명 사신은 말을 타고 가는 것으로, 후술하듯 정확히는 걸어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명확한 해답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앞서 허종과 명 사신이 제시한 근거들은 각자의 해석을 전제로 해서 그에 맞는 근거를 끌어다 대는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쟁점은 조선에 유리한 게, 허종의 말마따나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을 명조가 묵인해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을 非禮로 본 동월의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는 한, 기왕의 관례를 뒤집어야 하는 명 사신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명 사신이 가지고 온 ‘諸國迎詔儀註’에 연을 타고 조서를 맞이하는 예가 없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諸國迎詔儀註’는 『대명집례』 蕃國接詔儀注로 조선이 지니고 있는 『번국의주』 蕃國接詔儀注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여기에 국왕의 乘輦이 적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乘馬나 徒行이 기재된 것도 아니었다.

이후에 장소를 평산도호부 金巖站으로 옮겨가서도 지속된 허종과 사신의 논쟁<sup>42)</sup> 또한 같은 성격의 일이었다. 허종은 이전에 온 사신들도, 명 조정도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을 非禮라고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것 외에 논리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였으니, ‘迎詔는 朝廷의 大禮여서 국왕은 儀物을 가지고 맞이해야 하는데 輦이 의물이다. 예전에 巡狩·會同 시에 천자는 乘輅하고 諸侯는 乘車하였는데, 지금은 乘車하는 제도는 이미 없어지고 輦이 諸王殿下가 마땅히 타야 하는 것이다’라고 한 언급이 그러한 것이다. 영조 시에 乘馬가 아니라 乘輦이어야 ‘예를 이룰(成禮)’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지고 온 의주에 국왕의 乘輦이 적시되지 않았기에 非禮라고 인식하는 사신에게 이러한 식의 방증이 유효한 설득 수단으로 작용할 리는 없었을 것이다.

허종이 乘輦을 고수해서인지 명 사신들은 의주를 직접 보여주면서까지 乘輦의

42)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갑술 4번째 기사.

非禮와 乘馬의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즉 사신들은 『大明洪武集禮』를 보여주면서 「接詔書儀」에는 ‘具冕服行’이, 「受上賜宣勞儀」에는 ‘王乘馬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고, 이번 영조 시에 國王으로 하여금 말을 타도록 함은 권도를 따른 것이며 이전에 因循하여 연을 탔더라도 이는 非禮로 지금은 행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禮에는 乘馬가 마땅하기에(禮當乘馬)’ 의주를 고쳐 오도록 요구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大明洪武集禮』의 「接詔書儀」와 「受上賜宣勞儀」는 특별한 게 아니라 각각 『大明集禮』의 蕃國接詔儀注와 蕃國受印物儀注에 해당하는 것이었다.<sup>43)</sup> 재삼 언급하였듯이 이들 의주는 『번국의주』의 蕃國接詔儀注와 蕃國受印物儀注와 사실상 같은 것이었다. 명 사신이 허종이 지니고 온 『藩王儀註』를 보고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과 차이가 없고 이 때문에 자신들의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명 사신은 『대명집례』를 근거로 하여 ‘禮에는 乘馬가 마땅하다’라고 확신하였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는 어디까지나 주관적 해석에 불과한 것이었다. 다른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명 사신은 「接詔書儀」에 적시된 ‘具冕服行’의 ‘行’을 ‘徒行’이라고 보면서 이번 영조 시에는 권도 차원에서 국왕이 말을 타야 한다고 하였지만, ‘行’을 ‘徒行’으로 보아야만 하는 명확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조선 측이 ‘行’을 연을 타고 행하는 것으로 본 만큼이나 주관적 해석이었다. 후술하듯 조선 측은 이 허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허종은 명 사신의 이러한 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국왕에게는 ‘중국 사신의 언변이 엄정하고 확고하여 여러모로 설명하여도 논파할 수 없었다’라고 보고하였다. 향후 조선 측 대응의 관건은 『대명집례』에 근거하여 乘馬를 주장하는 견해를 제대로 논박하는 것이 되리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3월 13일(정축)에 영조례를 거행하기로 한 상황에서<sup>44)</sup> 그 3일 전에 도착한 원 접사 허종의 馳啓를 듣고서, 성종은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sup>45)</sup> 즉 ‘개국 이래

43) 실제로 「接詔書儀」의 ‘具冕服行’과 「受上賜宣勞儀」의 ‘王乘馬行’이라는 구절은 『대명집례』 권32. 賓禮3 遣使의 蕃國接詔儀注와 蕃國受印物儀注에서 확인된다.

44)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신미 1번째 기사.

45)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갑술 5번째 기사.

국왕이 말을 타고 조서를 맞이한 예는 없었고 사신이 『대명집례』에 의거하여 말을 타고 조서를 맞이하도록 했더라도 갑자기 그 말을 좇을 수 없다. 領敦寧 이상과 政府·禮曹에 문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성종은 사신의 乘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도 『대명집례』에 근거한 사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다소 수세적으로 반응하였다. 사신의 주장은 근거가 있다고는 해도 당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성종은 후술할 領敦寧 이상과 政府·禮曹의 각종 의견을 청취한 뒤에 『대명집례』에 근거하여 乘馬를 주장하는 견해를 부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즉 성종은 영조 시 국왕의 乘馬를 절대 시행할 수 없는 일로 못을 박으면서 그 근거로 『藩王儀註』에는 乘馬, 乘輦의 문구가 없는데, 명 사신의 한때의 말로 갑자기 祖宗의 구례를 바꿀 수 없음. 『번왕의주』는 홍무제가 特賜한 것. 이번에 말을 타면 조종의 일을 잘못된 것으로 만듦. 『번왕의주』 가운데 유독 '受上賜宣勞儀'에 乘馬의 구문이 있는데, 조서를 맞이함은 중한 일로 예물을 갖추어야 하는데 비해 上賜를 받는 일은 경한 까닭에 예물을 갖추지 않아서 말을 타도록 한 것' 등을 언급하였다. 핵심은 조종의 구례를 바꾸기에는 乘馬의 禮的 근거가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사신이 근거한 『大明集禮』에 대항하여 성종은 홍무제가 사여한 『藩王儀註』 곧 『번국의주』를 활용하여 사신의 견해를 반박하고 乘輦의 예적 타당성을 주장한 것이다.<sup>46)</sup> 『번국의주』에는 乘馬, 乘輦의 문구가 없기는 해도 上賜를 받는 시에는 乘馬인 사실을 감안할 때 그보다 중한 조서를 받는 시에는 乘輦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시간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앞서 언급한 領敦寧 이상과 政府·禮曹의 각종 의견을 간략히 정리·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47)</sup>

46) 『대명집례』와 『번국의주』가 사실상 동일하기에, 현재의 시각에서 보자면, 명 사신과 조선 측이 각각 『대명집례』와 『번국의주』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희극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명 사신은 처음에는 『번국의주』의 존재를 몰랐으며 이 책의 성격 또한 알고 있지 못하였고, 조선 측도 『대명집례』의 실물을 본 적이 없었으며 『번국의주』가 『대명집례』 빈례의 몇몇 의주를 뽑아 편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서로 간 정보 부족의 상황에서 희극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47)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갑술 5번째 기사.

논의에 참여한 신하들은 모두 말을 타도록 한 명 사신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沈澮와 盧思愼은 권도의 차원에서 국왕이 말을 탈 것을 권유하였다. 사신의 의견이 옳아서가 아니라, 사신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반복적으로 설득해도 사신이 계속 고집하면 어쩔 수 없어서였다. 당시 논의에서 언급된, 명 사신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각종 이유를 열거해 보자면, (1) 국왕이 연을 타고 조서를 맞이하는 것은 홍무제 이래로 일인데 그동안 사신도, 조정도 이를 문제로 삼은 적 없음, (2) 사신의 말로써 갑자기 祖宗舊禮를 바꿀 수 없음, (3) 명 사신이 전거로 삼은 『대명집례』는 『번국의주』와 달리 본국에 반사한 것이 아닌데 사신의 말만 듣고 갑자기 준용할 수 없음<sup>48)</sup> 등이었다. 기본적으로 원접사 허중이 앞서 말한 바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명집례』를 하사받지 못하였기에 사신의 말만 듣고 갑자기 이를 준용할 수 없다고 하는, 다소 궁색해 보이기 는 하나 허중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명집례』에 근거한 명 사신의 논리가 내포한 허점을 파고드는 경우도 있어 주목된다. 李崇元은 '홍무제 이래 조서를 맞을 때 국왕이 연을 탔고 그때에도 『대명집례』가 있었지만, 사신은 이를 그르다고 하지 않았고 조정 또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였다. 李克培는 이보다 더 예리하게 '『대명집례』 接詔儀에는 '王具冕服行'이라는 구문이 있을 뿐 말을 탄다고 하는 언급이 없고, 受上賜宣勞儀에만 '王乘馬行'이 언급되어 있다. 조서를 맞이함은 賜物을 받는 것보다 중하고 接詔書儀에는 말을 탄다고 하는 문구가 없는데, 受賜物儀에 의거하여 말을 타야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며, 柳曄 등은 '『번국의주』는 홍무제가 반사해준 것으로 그 안의 '接詔書'에는 '王具冕服行'이라는 구문이 기재되어 있고 사신이 보여준 『대명집례』와도 다르지 않다. 국왕이 연을 타고 조서를 맞이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고 명 사신이 그르다고 한 적이 없다. '具冕服行'은 지금 명 사신의 견해인 말을 타고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조선 조정은 자체적으로는 『대명집례』에 근거하여 영조

48)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었다. 迎詔는 大事로 嚴肅을 다해야만 하는데, 乘馬는 초라하여 威儀가 없어 그럴 수 없다(慎承善).



시 乘馬를 주장한 명 사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극복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명 사신 측의 『대명집례』에 의거한 공세의 충격에서 벗어나, 명 사신이 근거한 『대명집례』에도, 조선 측이 의거한 『번국의주』에도 ‘王具冕服行’만이 적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말을 타도록 한 명 사신의 견해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대명집례』와 『번국의주』 모두에서 迎詔보다 비중이 떨어지는 賜物을 받는 시에 말을 타도록 한 것으로 보아 迎詔 시에는 乘馬가 아닌 乘輦이 예에 부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조선 조정의 정리된 입장은 명 사신을 설득하기 위해 보내는 問禮官 權景祐에게 준 事目에<sup>49)</sup>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즉 ‘말을 타는 것이 불가하다는 국왕의 뜻을 명 사신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조종조 이래 국왕은 영조 시에 연을 탔고 이때에도 『대명집례』가 존재하였지만 어떠한 詔使도 『대명집례』에 근거하여 그르다고 한 적이 없고 명 조정 또한 책하지 않았다. 『대명집례』에는 ‘王具冕服行’만이 적시되어 무엇을 타야 하는지가 명확지 않은데, 사신은 ‘行’을 근거 없이 ‘徒行’이라고 하고 있다. 홍무제는 沒人情하게도 변왕이 조서를 받을 시에 면복을 갖춘 채 교외에서부터 闕庭까지 건도록 예를 제정하였을 리가 없다. 홍무제 이래 역대 황제가 연을 타는 것을 그르다고 하지 않았는데, 사신의 말을 좇아 경솔하게 고례를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명 사신을 설득했는데도) 명 사신이 불가하다고 하면, 원접사 허종도 이 뜻으로 명 사신을 반복하여 설득하도록 한다. 명 사신이 (乘輦이 비례라고) 황제에게 奏稟하고자 한다고 들었는데, 국왕 역시 황제에게 주품하고자 한다’ 등이 事目的 요체였다. 이는 사신의 문제 제기가 개인적 성향·개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대명집례』를 근거로 하여 ‘徒行’(徒行이어야 하나 권도로 乘馬)을 확신해온 사신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50)</sup>

49)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을해.

50) 한편 問禮官 權景祐를 명 사신이 머무는 곳에 보내고 난 후에 典翰 李昌臣은 ‘『禮記』를 전거로 하여 天子가 하늘을 공경함은 諸侯가 천자를 공경함과 같기에 국왕이 冕服을 입고 연을 타고 조서를 맞이하는 것은 天子가 대로를 타고 하늘을 높이는 것과 같다’라고 晝啓하였다. 방증 논리이긴 하나 국왕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성종은 그날 벽제관에 머무는 禮曹判書 柳輕에게 下書하여 권경우의 설득이 통하지 않으면, 이

3월 12일(병자) 문례관 권경우의 復命 내용에 따르면,<sup>51)</sup> 권경우는 앞서 언급한 사목의 뜻으로 사신들을 설득하였지만, 두 사신은 ‘국왕이 임의대로 연을 타다면 우리는 도보로 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명 조정에서 시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수하였다. 이때 동석한 원접사 허종의 中朝 諸王과 布政司의 조서를 맞이하는 절차에 관한 질문에 두 사신이 ‘諸王은 문밖에서 도보로 맞이하고, 布政司는 성곽 밖에서 乘馬로 맞이한다’라고 하자, 허종은 흥무제가 예를 제정할 때 인정에 맞지 않게 布政司는 말을 타고 藩王은 도보로 맞이하게 할 리가 없다고 했다. 두 사신은 ‘海外의 제도는 다름이 있다’라고 반박하자, 허종은 ‘王者無外’의 논리로 응수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의 대응 논리 때문인지 명 사신에게 가장 강력한 카드로 기능해 온 『대명집례』에 근거한 乘馬 주장이 종적을 감춘 대목이다. 명 사신은 국왕이 연을 타면 자신은 도보로 간 후 명 조정에서 시비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대응 방식을 변경하였다. 국왕의 乘輦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견지하면서도 乘馬를 확신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조선 측이 乘輦을 고수하면 그 시비를 명 조정에 위임하겠다는 식으로 한발 물러서고 있어 향후 사신의 양보 가능성을 암시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中朝 諸王과 布政司의 조서를 맞이하는 절차에 관한 허종의 질문은 의도치 않게 사신의 ‘徒行’ 주장을 흔드는 묘수로 작용한 듯싶다. 제왕과 포정사의 경우와 비교해서 조선 국왕(번왕)이 도성 밖에서 도보로 조서를 맞이하는 것은, 정확히는 도성 밖에서 궁궐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인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치기 때문이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모종의 성과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신이 끝내 연을 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곤혹스러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조선이 물러설 수도 없었다. 권경우의 보고를 전해 들은 후 성종은 그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御書事目を 활용하여 사신을 재차 설득하도록 하였다.<sup>52)</sup>

---

창신이 아뢴 내용도 활용하여 사신을 설득하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병자 1번째 기사.

51)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병자 5번째 기사.

52)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병자 6번째 기사.

- 조종 이래 연을 탔으나 명 사신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음. 그 예가 인정에 합치하였기 때문에 그러함. 舊儀를 경솔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사신은 도보로 가겠다고 하나, 홍무제가 예를 제정할 시에 성 밖에서 조서를 徒行하도록 하지 않음. 사신의 徒行은 예에 부합하지 않음.
- 사신은 예를 잘 알면서도 이 일만 前儀를 따르지 않고 있으니, 이번은 임시로 舊例에 의거하고 명 조정에 돌아가 품달하여 재가를 받는 것이 어떠한가?

첫 번째는 기준에 언급된 바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보로 가겠다는 사신의 언급에 대한 대응 논리일 것이다. 특히 마지막이 주목되는데, 이는 영조례를 거행하기로 한 날짜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어떻게든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제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싱겁게도’ 권경우는 도중에 注書 權璜을 만나 중국 사신이 연을 타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듣고는 권빈과 함께 돌아왔다. 권빈의 계문에 따르면,<sup>53)</sup> 이날(12일) 저녁 식사 후 허중이 또다시 사신들을 설득하면서, ‘諸王은 문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데, 지금 조선 국왕으로 하여금 郊外에서 徒步하도록 하니, 일국의 臣民이 통분한다’라고 하자, 사신은 그간의 견해를 바꿔 ‘조서를 맞이할 때는 연을 타고 칙서를 맞이할 때는 말을 타는 것이 事體에 가깝다’라고 하였다.<sup>54)</sup> 조선 측의 뜻대로 논란이 마무리된 것이다.<sup>55)</sup> 국왕은 이 소식을 영조례

53)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병자 6번째 기사.

54) 앞서 소개한 성종 19년 3월 정축 기사에서 영조례 거행 시에 “임금이 詔書를 인도하여 輦을 타고 앞서가고 중국 사신은 말을 타고 조서를 따라서 갔다”라고 한 사실은 명 사신이 조선의 입장을 수용한 데 따른 결과였다.

55) 기존 연구에서는 “결국 명사들은 조서를 맞이할 때 연을 타고 칙명을 맞이할 때 말을 타도록 하자며 자신들의 주장을 일부 양보했다. 이 내용을 허중이 보고하자 성종은 관련된 의례의 절차를 알아 오도록 지시했다. 성종은 결국 명사의 수정 제의를 받아들였던 것이다”(이규철, 2015 앞의 논문, 179면)라는 식으로 영조 시 국왕 乘輦을 둘러싼 논란의 결론을 정리한 바 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필자는 명 사신이 일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견해를 철회했다고 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명 사신이 조서 시에는 관철하지 못했지만 칙서 시 국왕의 승마는 관철했다고 보는 듯한데, 당시 말을 타고 칙서를 맞이하는 것은 조선과 명 사신 간에 전혀 논쟁이 되지 않았다. 정확히는 양측 간에 의제로 부상하지도 않았다. 조선 조정 내에서도 이에 관한 논란은 없었다. 명 사신은 조서와 함께 온 칙서는 당연히 국왕이 말을 타고 맞이해야 한다고 보았고 조서도 그러해야 한다고 보아 승마를 주장했다가, 조선 조정과의 논쟁-영조 시 국왕의 교통수단-을 거친 후 조선 측의 견해를 수용하여 칙서와 달리 조서를 맞이할 시에는 국왕이 연을 타야 한다고 하였다.

를 거행하기로 한 전날 밤늦게 보고 받았기에, 즉시 권경우로 하여금 사신에게 가서 조서와 칙서를 맞이할 시 연을 타고 말을 타는 절차를 물어 오도록 했다. 당시 조서와 칙서가 함께 왔고 조서를 맞이할 시에 국왕은 迎勅 시의 乘馬와 달리 연을 타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함께 온 조서와 칙서를 맞이할 시에 국왕이 어떠한 교통수단을 통해 교외에서 궁궐까지 이동하는지를 조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갑작스레 해결되었기에 御書事目的 취지는 사신에게 전달되지도 못하였다. 명 사신의 乘馬 입장의 철회는 표면적으로는 허종의 설득이 주효한 데서 기인한 듯싶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中朝 諸王과 布政司의 조서를 맞이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나서 보니 이들과 비교해서 조선 국왕(번왕)이 도성 밖 교외에서도 보로 조서를 맞이하는 것은 공분을 살만큼 부당하다고 여겨졌을 것이다. 일정 정도는 명 사신에게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허종의 비판에 명 사신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데서 이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허종의 논리가 주효했다고만 볼 수 없는 게, 『대명집례』를 근거로 확신에 차서 徒行(권도로 乘馬)을 주장하다가 아예 『대명집례』를 입 밖에 내지 못한 데서 사신의 양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명 사신은 『대명집례』를 근거로 한 영조 시 국왕의 徒行(권도로 乘馬)에 관한 확신이 허물어져 乘輦을 비레라고 단정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구레인 乘輦을 부정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더욱이 예식 일자가 코앞이어서 어떠한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했기에, 명 사신은 허종의 의견을 기회로 조선 측의 입장을 수용한 듯싶다.

본 장을 갈무리하기에 앞서 영조 시 국왕의 乘輦을 둘러싼 논란을 조망해 보자면 이러하다.

명 사신의 애초 생각과 달리 『대명집례』 蕃國接詔儀注는 명 사신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지 못하였고, 논리상, 형세상 조선 측은 점차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 나갔다. 조선 측이 주장하는 乘輦에 있어서도 명확한 예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조선은 관례대로 하면 되지만 명 사신은 관례를 바꾸어야 하는 처지였기에, 양쪽 모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면 조선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국왕의 乘輦에 대해 사신도 명 조정도 문제로 삼은

적이 없는 사실은 명 사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공방이 지속되면서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카드가 빛을 잃고 이로 인해 오래된 관행을 뒤집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사신은 애초의 의지를 굽혀야 했을 것이다.<sup>56)</sup> 그 결과 명 사신은 조선 측의 주장을 수용하였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사신은 乘輦이 禮에 합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곧 권도 차원의 일로 보았을 것이다.

조선 측은 乘輦을 명확히 뒷받침해주는 예적 근거를 확보하진 못했어도, 명 사신의 견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영조 시 국왕의 乘輦이 고려회 祖宗之制였기에 물러설 수 있는 성격의 일로 생각지 않았다.<sup>57)</sup> 사신의 문제 제기 후 조선 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조 시 국왕의 乘輦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논리와 방증을 축적해 갔다. 이렇다고 乘輦의 명확한 예적 근거가 확보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명 사신의 보행(권도로 乘馬) 주장이 지닌 근거의 불충분을 부각하고 乘輦의 개연성을 높여 판이 뒤집히는 것을 제어하고 종래의 방식대로 거행되도록 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하였을 것이다.

### 3. 詔勅合迎을 둘러싼 논란과 그 귀결

명 사신이 영조 시 국왕의 乘輦을 수용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에는 조서와 칙서가 함께 왔고<sup>58)</sup> 이러한 경우는 드물지 않았는데,

56) 명 사신의 영조 시 국왕의 乘輦에 관한 문제 제기가 군기 잡기 식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正使인 동월은 예를 잘 아는 인물로서 조선 측의 비례를 문제 삼고 올바른 예를 구현하기 위해 乘輦을 문제 삼았을 것이다. 명 사신의 눈에는 乘輦이 비례로 비치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대명집례』를 근거로 영조 시 徒行(권도로 乘馬)이 타당하다고 애초부터 생각해서 乘輦을 문제 삼은 것인지, 乘輦이 비례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로서 이러한 논리를 고안했는지는 불명확하다.

57) 조선은 당연히도 명 사신의 문제 제기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진 않았다. 명 사신의 영조 시 국왕의 乘馬 주장은 조선이 禮를 포함하여 여러모로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거부한 것이지, 만약 예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수용했을 수 있다. 당시 국왕은 조선이 작성한 儀註에서 殿下를 국왕으로 고쳐야 한다는 명 사신의 건의 및 宣詔 후에 詔使는 中階에 나아가 正門으로 해서 동쪽으로 殿에 오르고 國王은 中階에 나아가 正門으로 해서 서쪽으로 殿에 올라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바 있다.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갑술.

명 사신은 기존 관행과 달리 조서와 칙서를 각각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방식과 상충하는 게 종래에는 조서를 맞이할 시에 칙서도 함께 맞이하였다.

조선으로서는 명 사신이 乘輦 대신에 乘馬를 주장한 때와 마찬가지로 조서와 칙서를 한꺼번에 맞이한 방식이 祖宗朝 이래 해 온 일이고, 그동안 명 사신이건 명 조정이건 간에 조서와 칙서를 한꺼번에 맞이한 방식을 문제 삼은 적이 없는 데 이번에 사신이 유별나게 문제시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조선 측은 명 사신의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것이고 乘輦을 관철하였듯이 명 사신을 설득하여 기존 방식대로 조서와 칙서를 한꺼번에 맞이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예상과 기대와 달리 조선 측은 이 건에서 있어서는 명 사신의 요구를 수용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조선과 명 사신은 하나씩 주고받는 무승부를 벌인 셈이다.

조선이 조서와 칙서를 각각 맞이해야 한다는 명 사신의 주장을 수용하게 된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보았듯이, 3월 12일(병자)에 성종은 명 사신이 영조 시 국왕의 乘輦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고 그 즉시 사신에게 사람을 보내 조서와 칙서를 맞이할 시 연을 타고 말을 타는 절차를 물어 오도록 하였다.

같은 날 領議政 尹弼商, 禮曹判書 柳攄, 都承旨 宋瑛 등이 碧蹄(館)으로부터 돌아와서 계문한 내용에 따르면, 명 사신은 ‘금일에 국왕이 연을 타고 조서를 맞이하고 다음 날에는 말을 타고 칙서를 맞이한다’라는 의사를 피력하였다고 한다. 윤필상 등은 국왕에게 말하기를 ‘사신이 乘輦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 반복하여 설득하면 같은 날에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sup>59)</sup>

이에 따르면, 대립 양상은 조서와 칙서를 날짜를 달리하여 맞이해야 한다는 명 사신과 한날에 맞이해야 한다는 조선 측 간의 견해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실체는 그렇지 않았다. 명 사신의 입장은

58)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정축 11번째 기사.

59)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병자 7번째 기사.

조서와 칙서가 함께 왔더라도 별도로 반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달리 말해, 영조례와 영칙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날짜를 달리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설령 한날에 치르더라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명 사신의 견해대로 치른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申時에 중국 사신이 조서와 칙서를 받들고 慕華館에 이르니, 임금(은) 冕服을 갖추고 나아가 맞이하였다. 중국 사신은 조서와 칙서를 받들어 각각 龍亭에 안치하였는데, 그 勅書는 帳殿에 머물러 두었다. 임금이 詔書를 인도하여 輦을 타고 앞서가고 중국 사신은 말을 타고 조서를 따라서 갔다. 경복궁에 이르러 조서를 반포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그 조서는 말하기를……하였다.

중국 사신은 도로 나와 慕華館에 이르렀다. 임금은 翼善冠에 袞袍를 갖추고 敦義門으로 해서 나아가 칙서를 맞이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임금(은) 칙서를 인도하여 말을 타고 먼저 갔다. 경복궁에 이르러 칙서를 받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그 칙서는 말하기를……하였다.<sup>60)</sup>

이미 앞서 소개한 사례로, 서술 내용이 평이하여 부연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함께 온 조서와 칙서 가운데 (용정에 안치된) 칙서를 慕華館에 설치된 帳殿에 남겨두고 조서만이 궁궐로 이동하여 영조례가 거행된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반면 조선이 원하는 바의 핵심은 한날에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와 칙서를 한꺼번에 맞이하는 것이었다. 달리 말해, 조서를 맞이할 시에 칙서도 함께 맞이하고자 한 것이었다. 위 사례를 활용해 보면, 칙서를 帳殿에 남겨 두지 말고 조서가 궁궐로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해야 하고 국왕이 조서를 받을 때 칙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측의 견해차를 염두에 두면서 사건의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 사신 주장의 핵심이 이틀에 걸쳐서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 게, 다음 날(13일 정축) 벽제관으로부터 돌아온 問禮官 權景祐의 계문에 따르면,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는 절차’에 관한 물음에 대한 명 사신의 답변은 날짜를 달리 할지 한날에 맞이할지는 조선이 임의대로 결정해서 하라는 것이었다.<sup>61)</sup> 명 사신

60)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정축 11번째 기사.

이 권경우에게 한 말은 윤필상 등에게 한 말과 상이한 셈인데, 실제로는 상충하지 않는 게 후술하듯 명 사신이 중시한 점은 조서와 칙서를 낱짜를 달리하여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조례와 영칙례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하루 안에 두 의례를 치르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 영조례와 영칙례를 낱짜를 달리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었다.<sup>62)</sup>

윤필상 등은 사신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리라고 예상했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윤필상 등의 계문을 듣고, 13일(정축)에 성종은 원접사 허종을 통해 사신에게 ‘모화관에는 房室이 없어 침숙이 어렵고 조서와 칙서를 일시에 반사하는 것은 유래가 오래되어 낱짜를 달리하여 맞이하면 古例에 어긋난다’라고 하여, 사신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완곡히 전하였다. 조선 측은 조서를 맞이할 시에 칙서도 함께 맞이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채 하루 안에 조서와 칙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신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하루 안에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게 되면 조서와 칙서를 한꺼번에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서였을 것이다. 이러한 대응 전략은 윤필상 등의 계문이 조서와 칙서를 낱짜를 달리하여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만을 전하여 사신의 본의인 영조례와 영칙례를 분리해서 거행하고자 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영조례를 거행하기로 한 날이 13일(정축)인데, 이날에 조서와 칙서를 어떤 식으로 맞이해야 할지를 두고 조선과 명 사신 간의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날 하루 안에 이견을 조정해야 했기에 양측 사이에 논의가 매우 숨 가쁘게 오고 갔다.

벽계관으로부터 온 黃陸雲의 계문에 따르면, 허종의 언사에 대해 사신들은 오늘(13일) 조서를 반포하고 내일(14일) 칙서를 반포하겠다고 하면서, 날씨가 온화하여 모화관에서 침숙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63)</sup> 순진한 척하는지 실제로 그러한지 알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 명 사신은 조선 측 언사 이면의 뜻을 외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古例에 어긋난다고 하는 조선 측의 이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61)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정축 2번째 기사.

62)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정축 7번째 기사.

63)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정축 3번째 기사.



국왕은 左承旨 韓堰을 보내 사신에게 ‘명 사신이 慕華館에 침숙하는 것은 황공한 일이라고’ 하였다. 오늘 내에 조서와 칙서를 모두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거듭 표한 셈인데, 사신은 館內에 帷幄을 설치하면 유숙이 가능하다고 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조서와 칙서를 반사하고자 하는 뜻을 고수하였다.<sup>64)</sup>

사신이 이렇게 반응하자, 조선 측은 본심을 직접 드러냈으니 조서와 칙서를 일시에 맞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즉 성종은 李克墩을 보내 사신에게 ‘조서와 칙서를 일시에 맞이한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됨. 사신이 강경하게 불가하다고 하여 따르려 했지만, 조서와 칙서가 일시에 함께 왔는데 조서만을 맞이하고 칙서를 교외에 두는 것은 옳지 못함. 두 사신이 조서를 받들고 오고 頭目으로 하여금 勅書와 賜物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禮에 부합하지 않음. 迎詔는 盛禮이고 迎勅은 殺禮로 두 사신이 조서와 칙서를 일시에 받아 왔으니 頒詔하는 盛禮에 勅書도 함께 주는 것이 禮에 부합함’ 등을 전하도록 하면서 조서와 칙서를 일시에 맞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조서와 칙서를 일시에 맞이하는 방식은 조종조 이래 고레이면서 禮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조선 측이 본심을 드러내고 조서와 칙서를 일시에 맞이하는 방식이 예에 부합한다고 하자, 명 사신도 이에 적극적으로 응수하여 이극돈에게 『대명집례』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대명집례』란 謄寫文으로 된 蕃國接詔儀注와 蕃國受印物儀注를 말하였을 것이다. 『대명집례』를 보여주는 행위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조치로, 영조례와 영칙례 각각의 의주가 있는 이상 이들 예식도 별도로 치러야 함을 암묵적으로 말한 셈이다. 이극돈은 ‘이것은 영조례와 영칙례 각각의 의주로, 조서와 칙서가 단독으로 올 시에는 해당 의주로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나, 지금은 조서와 칙서가 일시에 왔기에 頒詔 시에 칙서를 함께 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sup>65)</sup> 그는 명 사신의 생각과 달리 『대명집례』의 蕃國接詔儀注와 蕃國受印物儀注라는 존재가 조서와 칙서가 일시에 왔을 때 이를 각각 맞이하는 예적 근거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副使는 ‘조선이 명 朝廷의 儀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명 조정을

64)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정축 4번째 기사.

65)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정축 5번째 기사.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들은 명 조정의 의주를 거행해야만 하며, 郊外에 칙서를 남겨두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조서를 맞이하고 칙서를 맞이하는 두 가지 일을 한날에 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명 사신의 논리는 간명하였다. 朝廷의 儀註(『대명집례』 蕃國接詔儀注와 蕃國受印物儀注)를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영조례와 영칙례 각각의 의주가 있으니 예식을 별도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sup>66)</sup> 명 사신 주장의 요체는 영조례와 영칙례를 별도로 치르는 것이기에, 명 사신은 날짜를 달리하여 맞이할 경우 황제의 명령(칙서)을 초야에 내버려 둔다고 하는 조선 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하루 안에 조서와 칙서를 모두 맞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제 대립 지점은 분명해졌다. 조선은 조서를 맞이할 시에 칙서도 함께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면, 명 사신은 각각 행해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명 사신의 禮的 근거는 『대명집례』에 영조례와 영칙례 각각의 의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각각의 의주가 구비되어 있기에, 일시에 오더라도 각각 거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 명료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선은 '『대명집례』에 영조의 의와 영칙의가 각각 있다고 할지라도' 식으로 비교적 분명한 사실을 덮으면서 한꺼번에 오면 조서를 맞이할 시에 칙서도 함께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근거를 제시하기는 했으나 결정적인 무언가는 없었다. 결론을 내놓고 그에 맞는 논리와 근거를 찾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乘輦이나 乘馬나를 두고 갈등을 벌였을 때와는 형세가 달랐다. 그때에는 『대명집례』(『번국의주』)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 종래의 방식대로 거행하면 되는 조선 측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면, 이 건에서는 『대명집례』(『번국의주』)의 존재가 명 사신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명 사신은 乘馬를 주장할 때와 대조적으로 단순 명료하게 논리를 전개한 데 비해, 조선 측은 비교적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다소 궁색하게 여러 논리를 만들어내는 듯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乘輦/乘馬 때와 상이한 관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국왕은 이극배를 통해 사신을 또다시 설득하였다. 이극배는 下敎대로 이전의 명 사신들은 조서와 칙서를 일시에 반사하였고 각각 행하는 것이 禮文에 위배된

66)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정축 7번째 기사.

다고 하는 취지로 거듭 설득하였다. 이전의 논리를 반복한 셈인데, 명 사신의 입장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명 사신은 명 조정의 의주, 곧 『대명집례』를 봉행해야 하고 명 조정의 승인이 없다면 조선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조선의 견해대로 한다면 조칙 자체를 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표출하였다.<sup>67)</sup>

명 사신은 입장이 확고부동하여 조서와 칙서를 따로 맞이하지 않으면 모화관으로 이동하지 않고 홍제원에서 유숙할 것이라고 하였다. 예식을 거행하기로 한 날은 오후를 지나고 있었고 국왕은 조칙을 맞이하기 위해 교외에까지 나온 상황이었기에, 성종은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했을 것이다.

이에 국왕은 ‘前例에 어긋나더라도 부득이 따라야 하겠다’라고 양보의 의사를 비치면서 領敦寧 이상에게 의견을 구하였다. 당시 국왕은 명 사신의 말이 심히 거만하여 모욕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조서와 칙서를 따로 맞이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보다는 견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식의 언설이 오만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윤필상 등은 사신의 말이 모욕적이긴 하나 ‘참고서 억지로 따름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국왕은 ‘말을 타는 것에 불평은 없으나,<sup>68)</sup> 홍무제 이래 조서와 칙서를 일시에 맞이하였는데 전례를 어기는 것은 義에 불가한 까닭에 쉽사리 좇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윤필상 등이 재차 權道로 사신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 결단을 권유하자, 성종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성종은 右承旨 李季男을 보내 ‘조서와 칙서를 오랫동안 초야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미안하여 명 사신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사신은 和色하면서 이계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듣건대, 전하께서 독서를 많이 하시어 禮를 아시고 朝中の 大臣 또한 禮를 아는 이가 있습니다. 조서와 칙서를 맞이한 시의 兼行은 前例가 있어, 전하께서 전례를 따르시려고 하였음은 옳으며, 지금 儀註를 보시고는 곧 變하여서 通하였음도 또한 옳으니, 賢王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우리가 조서를 받들고 들어가 頒詔하여 전하께서

67)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정축 7번째와 8번째 기사.

68) 조서와 칙서를 별도로 맞이하면, 영칙 시에 국왕은 말을 타고 칙서를 맞이해야 해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조서와 칙서를 함께 맞이하면 말을 탈 일이 없게 된다.

조서를 받는 禮를 마치면, 우리는 도로 나오고 전하께서도 또한 나오셔서 말을 타고 칙서를 인도하여 들어가, 칙서를 받는 禮를 마친 뒤에 相會禮를 행함이 옳을 것입니다.<sup>69)</sup>

사신이 말하고자 한 바는 儀註 곧 『대명집례』에 의거한 詔勅分迎이 궁극적으로 예에 부합하는 옳은 일이고, 국왕과 대신이 전례를 따라 조서와 칙서를 일시에 맞이하려다가 의주를 본 후 나누어 맞이하는 것으로 바꾼 결정은 예를 알고 현명한 태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명 사신의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는 절차에 관한 상세한 언급에 대해서 李季男은 ‘국왕이 일을 이미 처리하였다’라고 하여 이견이 없음을 표명하였다.<sup>70)</sup> 그리하여 앞서 거듭 소개한 사례에서 보듯, 이날 늦은 오후인 申時에 조서와 칙서를 별도로 맞이하는 유례없는 예식이 거행되었다.

본 장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조선이 사신의 주장인 詔勅分迎을 수용하지 않으려 한 ‘숨겨진’ 이유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표면적인 이유는 누차 공표했듯 詔勅合迎이 전례라는 사실 및 그간 명 사신도 명 조정도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 사신의 말만 믿고 전례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은 전례가 禮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것을 예에 맞게 개정하곤 하였기에, 전례는 필요충분한 이유가 되긴 어려울 듯싶다. 조선의 성향을 감안하면, 조선은 詔勅合迎이 단순히 전례여서가 아니라 예에 부합한다고 해서 명 사신의 詔勅分迎을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과 명 사신 간 여러 차례의 논쟁을 보았을 때, 조선 측의 詔勅合迎이 예에 부합한다고 보긴 어렵다. 명 사신이 주장하는 詔勅分迎 또한 禮書(의주)에 적시되진 않았지만, 의주를 연역해 보면 詔勅分迎이 詔勅合迎보다는 예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 사신의 논리는 간명한 반면 조선 측의 논리는 장황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적어도 조선 측은 명 사신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詔勅合迎이 禮의으로 타당한 데 비해 명 사신이 주장하는 詔勅分迎은 그러하지 않다고는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다.

69)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정축 10번째 기사.

70)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정축 10번째 기사.

이렇다고 한다면, 조선은 명 사신과 논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詔勅合迎이 禮的으로 취약하다고 보면서도 詔勅分迎이 논란의 여지 없이 타당한 수준의 것은 아니어서 전례를 바꾸어가면서까지 이를 수용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하기에는 걸리는 대목이 하나 있다. 성종이 詔勅分迎을 따르기 어려운 이유를 언급하는 와중에 ‘내가 말을 탄다고 하여 어찌 불평이 있겠는가?(予之乘馬 有何不平)’<sup>71)</sup>라고 한 언급이 바로 그것이다. 이 언설은 역설적이게도 국왕의 乘馬가 詔勅分迎을 따르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였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詔勅合迎의 방식으로 의례가 진행되면 조서를 맞이할 시에 칙서도 함께 맞이하는 것이어서 조서와 칙서는 함께 궁궐로 이동하고 이때 국왕은 연을 타고 궁궐로 이동해야 해서 국왕이 말을 탈 일은 없게 된다. 이와 달리 詔勅分迎의 방식에서는 국왕이 별도로 거행되는 영칙례의 예식 절차 과정에서 모화관에서 궁궐로 이동할 시에 말을 타야 했다.

말을 타고 칙서를 맞이하는 것은 조선과 명 사신 간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고, 당시 조선 조정 내에서 누구도 공개적으로 영칙 시 말을 타고 궁궐로 이동해야 하는 것에 이견을 표명하진 않았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영칙 시 국왕의 승마는 꺼려야 할 일로 간주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세종 6년 10월 11일(임자)의 ‘迎勅儀注’<sup>72)</sup> 세종 7년 1월 23일(갑오)의 ‘迎勅儀’<sup>73)</sup> 세종 11년 4월 26일(신축) 禮曹가 올린 ‘勅書賞賜迎接儀’<sup>74)</sup>와 『세종실록』 오례의 ‘迎勅書儀’<sup>75)</sup> 등의 교외에서 궁궐로 이동하는 부분에는 한결같이 ‘次殿下乘馬行’이 기재되어 있는데, 『국조오례의』의 ‘迎勅書儀’<sup>76)</sup>에는 ‘次殿下乘輦行’이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국조오례의』의 해당 구절이 오기가 아니라면 교외에서 궁궐로 이동 시 국왕의 교통수단은 말에서 輦으로 바뀐 것이다. 『국조오례의』는 성종 5년에 편찬되었기에,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성종 19년 당시에는 영칙

71)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정축 9번째 기사.

72) 『세종실록』 권26, 세종 6년 10월 임자.

73) 『세종실록』 권27, 세종 7년 1월 갑오.

74)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4월 신축.

75) 『세종실록』 권132, 五禮 嘉禮儀式 迎勅書儀.

76) 『國朝五禮儀』 권3, 嘉禮 迎勅書儀.

시에도 국왕은 연을 타고 궁궐로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詔勅分迎 방식을 수용하게 되면서 별도로 행해진 영칙례에서는 명 사신이 당연시한 대로 국왕은 말을 타고 모화관에서 궁궐로 이동해야 했다.

불만이 있었을 것이면서도 조선이 명 사신을 상대로 영칙 시 국왕의 승마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국조오례의』 ‘迎勅書儀’에서 기왕의 乘馬를 乘輦으로 개정한 일은 尊王 차원의 조치였을 것인데,<sup>77)</sup> 이 조치는 禮的으로 취약하였다. 더 정확히는 禮에 부합하지 않았다. 각종 迎勅書儀의 토대가 된 『번국의주』(『대명집례』) 蕃國受印物儀注에는 국왕이 말을 타고 궁궐로 이동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오례의 迎勅書儀 등에 乘輦이 아니라 乘馬가 기재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영칙 시 국왕의 乘輦은 조선에서 비교적 드문 일인, 존왕을 위해 非禮를 범하는 일인 셈이었다.

바로 이러한 약점 때문에 조선은 詔勅合迎만을 주장하였을 뿐 영칙 시 국왕의 乘輦은 전혀 언급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영조 시의 乘輦도 어렵사리 관철한 마당에다가 영칙 시의 乘馬는 사신이 가지고 온 『대명집례』 蕃國受印物儀注에 적시되기까지 하여, 조선이 당시 온 명 사신을 상대로 영칙 시 乘輦을 관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조선이 이를 모를 리는 없었다. 조선

77) 영조 시 국왕의 乘輦에 관한 논란 시의 언급이긴 하나, 愼承善의 다음과 같은 언설은 乘馬를 乘輦으로 개정한 조치가 국왕의 威儀와 연관되었음을 시사한다. “조서를 맞이함은 大事입니다. 마땅히 엄숙함을 다하여야 하니, 말을 타고서 초라하게 威儀를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迎詔 大事也 當盡嚴肅 不可乘馬 以致粗率無威儀也)”(『세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갑술 5번째 기사)라는 언설이 그것이다. 또한 乘輦으로의 개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사실은 고려말기에 『번국의주』 蕃國受印物儀注를 거의 옮겨적다시피 하면서 迎大明賜券使儀(『고려사』 권65, 지19 예7 빈례)를 작성하면서도 교외에서 사신을 영접한 후 왕궁으로 이동하는 행렬 순서를 기록한 부분에서는 蕃國受印物儀注와 달리 ‘次王乘馬行’이라는 구절이 삭제된 점이다(최중석, 2015 앞의 논문, 291-292면; 윤승희, 2018 『고려 말 명 사신 영접의례의 성립』 『한국중세사연구』 55, 579-581면). 실제 의식에서는 가마를 타고 이동하였을 것이다. 『세종실록』 오례의 迎勅書儀 등에서는 ‘次殿下乘馬行’이라고 하여 『번국의주』 蕃國受印物儀注대로 교외에서 궁궐로 말을 타고 이동하였지만, 이후 다시금 말이 아닌 가마를 이용해서 궁궐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추정하자면, 威儀 등을 감안할 때 영칙 시에 국왕은 가마를 타고 교외에서 궁궐로 이동해야 한다고 보았으면서도 『번국의주』 蕃國受印物儀注에 적시된 ‘次王乘馬行’이라는 구절을 의식하여 시기에 따라 나름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은 굽어 부스럼이며 ‘知禮’의 명성에 스스로 먹칠하는 식인 영칙 시 국왕의 乘輦은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sup>78)</sup> 조선(국왕)은 말을 타고 칙서를 맞이하는 것을 꺼렸을 것이면서도 이상의 이유에서 영칙 시 국왕의 乘輦은 주장하지 못하고 詔勅合迎을 관철하여 乘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일은 조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조선은 詔勅分迎을 수용하였고 영칙 시 乘輦은 아예 언급도 하지 못한 채 칙서를 맞이할 시에 국왕은 말을 타고 궁궐로 이동해야 했다.<sup>79)</sup> 불만이 있었지만 이를 공표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 4. 맺음말

조선은 명이 사여한 『번국의주』의 蕃國接詔儀注와 蕃國受印物儀注를 토대로 각각 영조례와 영칙례를 운영하였다. 『번국의주』란 번국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해야 하는 의례들의 의주를 반사해 달라고 하는 고려의 요청에 응해 명이 『대명집례』 빈례에서 해당 의례들의 의주를 뽑아 편찬하여 고려에 보낸 책자로, 고려와 조선은 『번국의주』를 토대로 하여 외교의례를 운영하였다.

조선은 명이 사여한 『번국의주』의 蕃國接詔儀注와 蕃國受印物儀注를 토대로 영조칙례를 운영하였음에도, 영조칙례의 일부 예식절차를 놓고 명 사신과 갈등 하곤 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번국의주』의 蕃國接詔儀注와 蕃國受印物儀注가 영조칙례 예식절차의 뼈대만을 갖추고 있다고 할 정도로 소략한 데서 기본적으로

78) 영칙 시에도 국왕이 연을 타고 궁궐로 이동하게 된 이후부터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조서와 칙서가 함께 온 경우에는 국왕이 일시에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였기에 영칙 시에 국왕이 무엇을 타고 궁궐로 이동해야 하는지는 조선과 명 사신 간에 문제가 될 수 없었고, 칙서만이 온 경우에는 朝官 사신은 진무한 대신 환관 출신 勅使가 주로 왔고 간혹 遼東都司의 官이 파견되어 왔기에, 이들 칙사의 禮에 대한 무관심 속에 별다른 논란 없이 국왕은 『국조오례의』대로 연을 타고 궁궐로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칙서만이 온 경우를 소개하자면, 성종 10년 윤10월에 遼東指揮인 高淸이 칙서를 가지고 왔고, 성종 11년 5월과 성종 14년 7월에 조선 출신 환관 鄭同이 칙서를 가지고 왔다.

79) 같은 이유에서 조선은 詔勅分迎을 수용하기로 한 이후 별도로 거행되는 영칙 시에 국왕이 연을 타고 궁궐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기인한다. 이것에만 의존해서는 영조칙례가 도저히 거행될 수 없었기에, 영조칙례를 실제로 거행해야 하는 측(조선)은 영조칙례 의주의 빈 부분을 자체적인 판단으로 메워야 했다. 조선은 제후 分義를 포함한 禮義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빈틈을 메웠지만, 그럼에도 그 결과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곤 하였다. 그러한 경우가 드물기는 했어도 말이다.

성종 19년에 조선과 명 사신이 迎詔 시 국왕의 교통수단 및 함께 온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는 방식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갈등한 것도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서였다. 『번국의주』(『대명집례』)는 영조 시에 국왕이 무엇을 타고 궁궐로 이동해야 하고, 함께 온 조서와 칙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맞이해야 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迎詔 시에 국왕이 모화관에서 궁궐까지 무엇을 타고 이동할 것인가를 놓고 조선은 乘輦을 명 사신은 乘馬를 주장하면서 갈등하였고, 함께 온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는 방식을 두고 조선은 조서를 맞이할 시에 칙서도 함께 맞이해야 한다고(詔勅合迎) 한 반면 명 사신은 조서와 칙서를 별도로 맞이해야 한다고(詔勅分迎) 주장하였다.

이들 갈등은 조선이 그동안 해 온 방식에 이때 온 명 사신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성종 19년에 명 사신이 문제로 삼기 전까지 명 사신이건, 명 조정이건 간에 영조 시 국왕의 乘輦 및 詔勅合迎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은 전혀 없었다. 영조 시 국왕의 乘輦 및 詔勅合迎은 성종 19년에 온 명 사신에게 처음으로 문제로 인식된 셈인데,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게, 영조칙례의 예식절차를 문제로 삼을지 여부 및 문제로 삼는다고 할 때 어느 지점을 문제가 있다고 할지는 사신의 성향, 역량 등에 의해서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명조는 개략적인 성격의 『대명집례』 ‘蕃國接詔儀注’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애초의 목적인 양, ‘蕃國接詔儀注’를 상세화한 의주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명 사신이 참고할 의주를 내려주지도 않았다. 또한 명조는 ‘蕃國接詔儀注’를 반사 받은 조선(고려)이 그 의주의 빈 부분을 (禮的으로) 타당하게 메워 운영하는지에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성종 19년에 온 正使 董越과 같은 인물처럼 (儀)禮 방면에 비상한 관심을 지닌 일부 사신은 조선(고려)에서 영조칙례가 제대로 구현되는지에 관심을 가졌고, 조선 측에 의해 상세히 작성된



의주 가운데 非禮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곤 하였다. 일부 의절을 문제 삼은 명 사신은 기본적으로 문명 중화의 구현 차원에서 ‘올바른’ 禮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러한 행보를 보였을 것인데, 이들이 문제로 삼는 지점은 같지만은 않았다. 문제가 되곤 한 일부 예식절차는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어서, 조선과 명 사신 사이에서, 명 사신 사이에서도 이에 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곤 하였다. 결국, 성종 19년에 온 명 사신의 성향, 역량 등에 의해 영조 시 국왕의 乘輦 및 詔勅合迎은 비로소 非禮로 부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사안은 명백한 비례여서가 아니라 당시 명 사신에 의해 비례로 호명된 것이다.

당시 명 사신은 개인적으로 확보하였을, 『대명집례』중에서 謄寫文으로 된 蕃國接詔儀注와 蕃國受印物儀注를 근거로 하여 영조 시 국왕의 乘輦을 비례로 규정하면서 乘輦이 아니라 乘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신이 의거한 『대명집례』 蕃國接詔儀注 및 사실상 이와 동일한 것으로 조선이 근거한 『번국의주』 蕃國接詔儀注에는 공히 ‘次王具冕服行’라는 구절만이 기재되어 있어, 국왕이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교외에서 궁궐로 이동해야 하는지는 분명치 않았다.

애초에 명 사신은 『대명집례』가 영조 시 국왕의 徒行(권도로 乘馬)을 명확히 뒷받침해준다고 확신했지만, 조선 측과의 여러 차례 논쟁을 거치면서 그러한 믿음은 약화·소멸하였다. 조선 역시 乘輦의 명확한 禮的 근거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다양한 논리를 통해 명 사신의 그러한 확신을 허무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되면서 논리상, 형세상 조선 측은 점차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 나갔다. 조선 측이 주장하는 乘輦에도 명확한 예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조선은 관례대로 하면 되지만 명 사신은 관례를 바꾸어야 하는 처지였기에, 양쪽 모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면 조선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국왕의 乘輦에 대해 사신도 명 조정도 문제로 삼은 적이 없는 사실은 명 사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迎詔 시 국왕의 乘輦을 명조가 묵인해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측은 이 지점을 집요하게 공략하였다. 공방이 지속되면서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명 사신의 카드가 빛을 잃고 이로 인해 오

래된 관행을 뒤집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명 사신은 애초의 의지를 굽히고 조선 측의 주장을 수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명 사신은 기존 관행과 달리 조서와 칙서를 각각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조선은 乘輦을 옹호할 때와 마찬가지로 조서와 칙서를 일시에 맞이한 방식은 祖宗朝 이래 일이고, 그동안 명 사신이건 명 조정이건 간에 조서와 칙서를 일시에 맞이한 방식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명 사신을 설득하여 기존 방식대로 조서와 칙서를 일시에 맞이하고자 하였다.

명 사신의 禮的 근거는 『대명집례』에 영조례와 영칙례 각각의 의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각각의 의주가 구비되어 있기에, 일시에 오더라도 각각 거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 명료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선은 ‘『대명집례』에 영조의와 영칙의가 각각 있다고 할지라도’ 식으로 비교적 분명한 사실을 덮으면서 한꺼번에 오면 조서를 맞이할 시에 칙서도 함께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근거를 제시하기는 했으나 결정적인 무언가는 없었다. 결론을 내놓고 그에 맞는 논리와 근거를 찾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乘輦이나 乘馬냐를 두고 갈등을 벌였을 때와는 형세가 달랐다. 그때에는 『대명집례』(『번국 의주』)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 종래의 방식대로 거행하면 되는 조선 측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면, 이 건에서는 『대명집례』(『번국 의주』)의 존재가 명 사신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래서인지 명 사신은 이 건에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詔勅分迎을 관철하고자 했고, 결국 조선은 前例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권도의 차원에서 사신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조선이 명 사신의 詔勅分迎 주장을 수용하지 않으려 한 데에는 이상의 표면적 이유 이면에 ‘숨겨진’ 이유가 작용하였으니, 국왕의 威儀를 위해 국왕의 乘馬를 회피하고자 한 심리가 바로 그것이다.

詔勅合迎의 방식으로 의례가 진행되면 조서를 맞이할 시에 칙서도 함께 맞이하는 것이어서 조서와 칙서는 함께 궁궐로 이동하고 이때 국왕은 연을 타고 궁궐로 이동해야 해서 국왕이 말을 탈 일은 없게 된다. 이와 달리 詔勅分迎의 방식에서는 국왕이 별도로 거행되는 영칙례의 예식 절차 과정에서 모화관에서 궁

궐로 이동할 시에 말을 타야 했다. 당시 말을 타고 칙서를 맞이하는 것에 관한 이견은 조선과 명 사신 간에서건 조선 조정 내에서건 공표된 적이 없었지만, 수면 아래에서 영칙 시 국왕의 승마는 꺼려야 할 일로 간주되고 있었을 것이다.

국초에는 국왕이 칙서를 맞이할 시에 말을 타고 궁궐로 이동하여 『세종실록』 오례 ‘迎勅書儀’ 등의 교외에서 궁궐로 이동하는 부분에는 ‘次殿下乘馬行’이 기재되고 있었지만, 『국조오례의』의 ‘迎勅書儀’에는 ‘次殿下乘輦行’이 기록되어 교외에서 궁궐로 이동 시 국왕의 교통수단은 말에서輦으로 바뀌어 있었다. 『국조오례의』는 성종 5년에 편찬되었기에,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성종 19년 당시에는 영칙 시에도 국왕은 연을 타고 궁궐로 이동해야 했다. 달리 말해, 당시 영칙 시 국왕의 승마는 꺼려진 것이다.

그런데 『국조오례의』 ‘迎勅書儀’에서 기왕의 乘馬를 乘輦으로 개정한 일은 禮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었다. 각종 迎勅書儀의 토대가 된 『번국주주』(『대명집례』) 蕃國受印物儀注에는 국왕이 말을 타고 궁궐로 이동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오례의 迎勅書儀 등에 乘輦이 아니라 乘馬가 기재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非禮를 범하면서까지 乘輦으로 개정한 일은 尊王 차원에서였을 것인데, 이러한 성격의 조치는 조선에서 비교적 드문 일이었다. 바로 이러한 약점 때문에 조선은 詔勅合迎만을 주장하였을 뿐 영칙 시 국왕의 乘輦은 전혀 언급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영조 시의 乘輦도 어렵사리 관철한 마당에다가 영칙 시의 乘馬는 사신이 가지고 온 『대명집례』 蕃國受印物儀注에 적시되기까지 하여, 조선이 당시 온 명 사신을 상대로 영칙 시 乘輦을 관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조선은 굵어 부스럼이며 ‘知禮’의 명성에 스스로 먹칠하는 식인 영칙 시 국왕의 乘輦은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국왕)은 말을 타고 칙서를 맞이하는 것을 꺼렸을 것이면서도 이상의 이유에서 영칙 시 국왕의 乘輦은 주장하지 못하고 詔勅合迎을 관철하여 乘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일은 조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별도로 행해진 영칙 시에 국왕은 말을 타고 궁궐로 이동해야 했다.

국왕이 함께 온 조서와 칙서를 별도로 맞이하고 칙서를 맞이할 시에 말을 타

게 된 일은 한동안 조선 조정 내에서, 조선과 명 사신 사이에서 논란거리로 작용하였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귀결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주제어 : 迎勅詔禮, 명 사신, 蕃國儀注, 외교의례, 乘輦

투고일(2019. 7. 29), 심사시작일(2019. 8. 12), 심사완료일(2019. 8. 21)

〈Abstract〉

Conflict and Its Characteristics between Joseon Court and Ming  
envoy Surrounding *YeongJochik*(迎詔勅) ritual in 1488

Choi Jongsuk \*

On March 13, 1488, the king of Joseon received a *Joseo*(詔書) and *Chikseo*(勅書) at *Gyeongbok* Palace. Unlike the previous events, Joseon and Ming envoys were at odds over the procedures of welcoming *Joseo* and *Chikseo*, specifically two issues. Joseon and Ming envoys were at odds over what means of transportation the king should travel from *Mohwaquan*(慕華館) to the royal palace to receive *Joseo*, claiming palanquin or horse, respectively. With a method to greet *Joseo* and *Chikseo* that came together, Joseon urged collective greeting, while Ming envoys suggested separate greeting.

The conflict over these issues was unusual. In the meantime, the king traveled to the palace on a palanquin when he greeted *Joseo*. Also the king greeted *Joseo* and *Chikseo*, that came together, at once. *Joseo* and *Chikseo* were moved to the palace together, and the king received *Joseo* and *Chikseo* in turn at the palace. Until the Ming Dynasty envoys took issue with it in 1488, no matter whether it was the envoys of the Ming Dynasty or the Joseon Dynasty, no one had ever questioned the king's palanquin riding and collective greeting of *Joseo* and *Chikseo*.

The 1488 conflict between Joseon and Ming envoys over the process of welcoming *Joseo* and *Chikseo* began when Ming envoys to Joseon took issue unusually. The Joseon Dynasty did not accept the opinions of the envoys and the envoys did not budge from their views, therefore conflicts arose. The dispute continued because the two sides failed to narrow their differences, and the dispute ended by reaching a dead end and making one-sided concessions without compromise. In the former, Joseon's view was accepted and the king rode a palanquin in greeting *Joseo* as is customary. In the latter, in accepting the views of Ming convoys, the king of the Joseon Dynasty went to

---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Korean History, Dongduk Womens University.

*Mohwaquan* to greet *Joseo*, to the *Gyeongbok* Palace by palanquin, to receive *Joseo*. After that, the king greeted *Chikseo* again from *Mohwaquan*, to take the horse, to the *Gyeongbok* Palace, and to receive *Chikseo*.

The article aims to break away from the conventional view of the conflict over diplomatic ritual between Joseon and Ming(envoys) as a power game. The conflict came amid a consensus between the two sides to realize the 'right' ritual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civilization *Chunghwa*(中華). The conflict was caused by the fact that their respective practices were in line with right manners on some ceremonial procedures where the 'right' practice does not exist clearly.

**Key Words** : *YeongJochik*(迎勅詔) ritual, Ming envoy, *Bunkukuiju*(蕃國儀注), diplomatic ritual, riding of palanquin